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713
결재일자	2015. 1. 2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민간협력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	
박명희	김성동	박성도	01/29 손정수		
협 조					

**- 범죄피해자지원센터 -**  
**2015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**



**행 정 국**  
**자치행정과**

**- 범죄피해자지원센터 -**  
**2015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**

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「범죄피해자지원센터」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**I 법 적 근 거**

-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17조(손실복구지원 등)

**II 사 업 개 요**

- 지원단체명 : (사)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(이사장 : 최주봉)  
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 
↳ 2014년부터 (사)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→ 북부센터로 관할 변경
- 사 업 명 : 범죄피해자 지원사업
- 지원금액 : 금60,000,000원(금육천만원)
- 사업기간 : 2015. 1월 ~ 2015. 12월

**III 2014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진실적**

- 사업내용 :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긴급지원, 살해현장 청소지원, 생활비 보조, 치료비 지원, 유자녀장학금 지원, 위로금 지급, 상담, 사법보좌(수사·법정 동행) 등의 직·간접 지원활동

■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및 실적

- ▶ 보조금 지원 : 금30,000,000원(금삼천만원)
- ▶ 보조금 지출내역

사업명	보조금 지출내역	지출액	비고
총 계	6개 구청 총사업비 중 1/6 분담	30,000	
위원회 활동경비	· 범죄피해자 현장(가정,병원)조사비 : 1,040 · 상담,현장조사 위원 중식대 : 390 ·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: 120 · 홍보활동(구청,경찰) : 160	1,710	
홍보비	· 현수막(공익광고) : 396 · 신문(공익광고) : 275 · 브로슈어 제작 : 200	871	
전문화 교육비	· 교재 : 210 · 강사료 : 100 · 기타 교보재, 간식 : 50 · 위원 실무교육 식대 : 140	500	
피해자 지원비	· 경제적 지원사업 : 23,919 - 긴급생계비, 치료비, 학자금, 심리치료비, 취업지원, 주거환경개선, 사건현장정리, 간병비 등)	23,919	
인건비	· 인건비 : 3,000 - 직원 1인의 인건비	3,000	

▶ 성북구 거주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 : 33건 / 118,591,270원

구 분	생계비 지원	치료비 지원 (심리치료 포함)	장례비 지원	구조금(유족 및 장해구조금) 지원
지원 건수(건)	10	17	1	5
지원 금액(원)	4,000,000	21,206,810	2,000,000	91,384,460

※ 보조금 지원액 대비 약 4배를 우리 구민이 지원받음

■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지원금액	정산금액	반납액
2012년	30,000	30,000	0
2013년	30,000	30,000	0
2014년	30,000	30,000	0

■ 보조사업의 소요경비

(단위: 천원)

총 소요액	자치단체 보조금 (6개구)	법무부 구조금
958,841	179,500 (구별 30,000 / 노원구 29,500)	779,341

- ※ 6개 구청 : 성북, 도봉, 노원, 동대문, 강북, 중랑 (범죄피해자지원 북부센터 관할)
- ※ 법무부 구조금 : 범죄피해자구조금 582,135,818원 + 기타 경제적 지원 180,387,450원 + 인건비 16,818,000원

IV 지원예산

■ 보조금 : 금60,000,000원(금육천만원)

- ▶ 지출방법 : 재무과에서 해당센터 은행계좌에 입금
- ▶ 예산과목 : 자치행정과, 민간협력사업 활성화, 사회단체육성,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
- ▶ 보조금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지 출 내 용	산출내역	보조금액
위원회 활동경비	· 범죄피해자 현장(가정,병원) 조사비 ·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· 상담, 현장조사 위원(상근) 중식대	- 2명*6회*20,000원 - 2명*6회*20,000원 - 3명*40회*3,000원	840
홍보비	· 신문(공익광고) · 브로슈어 제작	- 3회*550,000원 - 8,000매	475

사업명	지출내용	산출내역	보조금액
전문화 교육비	· 교재 · 기타 교보재, 간식 · 위원 실무교육 식대	- 7,000원*60부 - 120명*2,000원÷6구청 - 7,000원*40명*2회÷6구청	273
피해자 지원비	·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- 긴급생계비, 치료비, 학자금, 심리치료비, 취업지원, 주거환경개선, 사건현장정리, 간병비 등)	- 사건발생에 따라 심의회 지원	55,412
인건비	· 상담사 인건비	- 18,000천원÷6구청	3,000
<b>합 계</b>			<b>60,000</b>

▶ 보조금 정산 : 2016년 1월중 보조금 정산서 첨부하여 보고

붙임 :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. 끝.